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-194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0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정밀검사 횟수를 위해도에 따라 20회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해 우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,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

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수입식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

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

○ 전화 : 043-719-2168 팩스 : 043-719-2150

○ 전자우편 : namkung01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

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

고』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해당한다)”를 “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중 “해당한다)”를 “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 중 “제3호나목1)·2)·4)·5)”를 “제3호나목 1)·2)·5)·6)”으로, “다목1)·3)”을 “다목1)·4)”로 한다.

제29조의2제2항 중 “제27조제1항”을 “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별지 제28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30조제1항”을 “제30조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별표 9”를 “경우(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

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별표 9”로,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“제29조의2제2항”을 “제29조의2제2항(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된 원료·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을 연구·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료·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.

별표 8 제1호다목 중 “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”를 “매년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”로, “보관하여야”를 “보관해야”로 한다.

별표 9 제2호다목2)나)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항목 또는 횟수에 따라 20회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“해당합니다)”를 “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신고인 제3호 중 “해당합니다)”를 “해당하며, 담당 공

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9 제2호다목2)나)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다목2)나)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

처리부서	
연락처	

접 수 번 호		접 수 일 자	년 월 일
발 급 번 호		발 급 일 자	년 월 일

수하인 (수입화주)	성 명		
	연 락 처		

신고인 (구매대행자)	성 명	상 호	
	주 소	영업등록번호	

송하인	전자상거래 사이트주소		
-----	----------------	--	--

제 품 명			
총 수 량	(단위 :)	검 사 종 류	

제 품 내 역

NO.	제 품 명	수 량(단위 :)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신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·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교육이수증(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

- 4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26조(영업자의 구분 관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특별관리영업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. 별표 13 II. 개별기준의

-----.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----- 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-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영업자의 구분 관리) ① 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----- 가. -----.

제3호나목1)·2)·4)·5),
같은 호 다목1)·3) 및 같
은 II. 개별기준의 제8호바
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
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(영
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
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
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)
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
자

나.·다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9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
화) ① (생 략)

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
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
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
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
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
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
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
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
다)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
로 검사를 하고, 그 결과가 적합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

제3호나목1)·2)·5)·6)-
----- 다목1)·4) 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
화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---

신고를 한 자(이하 “수입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.

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.

④ 삭 제

⑤ (생 략)

제30조(수입식품등의 검사 등) ① (생 략)

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,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(이하 “구매대행 수입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

-----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-----

③ -----

----- 제30조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수입식품등의 검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우(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별표 9-----

인증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.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(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) 이내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49조의5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) (생략)

<신설>

발급해야 한다.

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 ① 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29조의2제2항(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 --.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9조의5(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포함된 원료·성분에 대한 시험방법을 연구·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료·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.